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의 6급 2항 5108의 장애내용란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에 8)의 내용 중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 무증후성 골수종(Smouldering)”를 “무증후성 골수종(Smouldering)”로 하며, 같은 란 9) 중 “2기, 3A기”를 “2기”로 하고, 같은 목의 7급 5111의 장애내용란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6)에 바)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2)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단순 영상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 운동범위의 괴리가 현저하거나 측정 결과가 상이처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연부조직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13) 비소세포폐암 3A기인 사람

17)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으로 진단받고 경과관찰 중

인 사람

바) “뚜렷한 신경압박”이란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고, 그 소견이 나타난 분절이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진찰소견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추간판탈출이 탈출(extrusion) 또는 격리(sequestration)에 해당하는 경우
- (2) 축상면 영상에서 경막낭 내 마미신경근 주위의 뇌척수액 신호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 (3)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영상에서 신경공 협착으로 신경근 주위 지방조직의 신호가 소실되거나 신경근의 형태 변형이 확인되는 경우

다. 준용등급 결정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고도의 천장관절염(Grade IV)이 확인된 사람은 7급(6109)으로 인정한다.

별표 4 제7호가목3)에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 결과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상이처의 부위·정도와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고, 재측정 또는 추가 검사를 통하여도 그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상이등급 판정의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4 제7호나목의 6급 2항 7121의 장애내용란 중 “한 팔”을 “두 팔”로

하고, 같은 목의 7급 7311 장애내용란에 2)의 내용 중 “둘째손가락”을 “둘째손가락이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3) 중 “그 밖에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목의 7급 7312 장애내용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가목2)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단순 영상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 운동범위의 괴리가 현저하거나 측정 결과가 상이처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연부조직에 대한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엄지손가락을 끝마디의 2분의 1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이나 중수지관절 중 1개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별표 4 제8호가목4)에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 결과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상이처의 부위·정도와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고, 재측정 또는 추가 검사를 통하여도 그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상이등급 판정의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4 제8호나목의 6급 2항 8119의 장애내용란 중 “한”을 “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4)

현행		개정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6급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2) 생략 <u><신설></u>	6급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2) 현행과 같음 <u>13) 비소세포폐암 3A기인 사람</u>
6급3항 5110	8) 다발성 골수종에서 형질세포종(Plasmacytoma), <u>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u> , 무증후성 골수종(<u>Smouldering myeloma</u>)으로 근치적 치료 중인 사람 9) 비소세포폐암 <u>1기, 2기, 3A기</u> 인 사람	6급3항 5110	8) 다발성 골수종에서 형질세포종(Plasmacytoma), 무증후성 골수종(<u>Smouldering myeloma</u>)으로 근치적 치료 중인 사람 9) 비소세포폐암 <u>1기, 2기</u> 인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6) 생략 <u><신설></u>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6) 현행과 같음 <u>17)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으로 진단받고 경과관찰 중인 사람</u>
6. 체간의 장애		6. 체간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가. 장애 측정방법	

현 행	개 정 안
6) 추간판탈출증 가)~마) 생략 <u><신설></u>	6) 추간판탈출증 가)~마) 현행과 같음 바) <u>"뚜렷한 신경압박"이란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고, 그 소견이 나타난 분절이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진찰소견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추간판탈출이 탈출(extrusion) 또는 격리(sequestration)에 해당하는 경우</u> <u>(2) 축상면 영상에서 경막낭 내 마미신경근 주위의 뇌척수액 신호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u> <u>(3)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영상에서 신경궁 협착으로 신경근 주위 지방조직의 신호가 소실되거나 신경근의 형태 변형이 확인되는 경우</u> 다. <u><신설></u> <u>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고도의 천장관절염(Grade IV)이 확인된 사람은 7급(6109)으로 인정한다.</u>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생략)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腱)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3)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 (현행과 같음) <u>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단순 영상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 운동범위의 괴리가 현저하거나 측정 결과가 상이처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연부조직에 대한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u> 3) (현행과 같음) <u>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 결과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상이처의 부위·정도과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고, 재측정 또는 추가 검사를 통하여도 그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상이등급 판정의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u>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6급2항 7121	<u>한 팔</u> 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6급2항 7121	<u>두 팔</u> 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7급 7311	1)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u>둘째손가락을</u>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7311	1) (현행과 같음) 2) <u>둘째손가락이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u>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현행		개정안	
	3) <u>그 밖에 손가락</u> 을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u><신설></u>		3) <u>새끼손가락</u> 을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u>엄지손가락을 끝마디의 2분의 1이상에서 잃은 사람</u>
7급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u><신설></u>	7급 7312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2) <u>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이나 중수지관절 중 1개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u>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생략)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腱)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u><신설></u>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단순 영상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 운동범위의 괴리가 현저하거나 측정 결과가 상이처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연부조직에 대한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4)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4) (현행과 같음) <u>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 결과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상이처의 부위·정도와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고, 재측정 또는 추가 검사를 통하여도 그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상이등급 판정의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u>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6급2항 8119	<u>한 다리</u> 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경우	6급2항 8119	<u>두 다리</u> 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경우